	규정명	사규번호 : 제정일자 : 2022. 12. 23. 개정일자 : 2024. 05. 01. 개정번호 : 1	페이지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		2 / 10

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목적

본 규정은 에경케미칼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.)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를 위하여 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
제 2 조 적용범위

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한다.

제 3 조 용어의 정의

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"자율준수"라 함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.
- "공정거래 관련 법규"라 함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경쟁당국 소관 법규, 시행령, 고시 및 지침 등을 총칭한다.
- "경쟁당국"이라 함은 경쟁정책을 수립·운영하며,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정부기관을 말한다.
- "자율준수프로그램(Compliance Program, 이하 "CP"라 한다.)"이라 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기준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회사의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.
- "자율준수관리자"라 함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.
- "자율준수전담팀"이라 함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 아래 CP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"CP 실시책임자"라 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리스크가 있는 현업부서의 장으로, 해당 부서의 자율준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"부서별 자율점검"이라 함은 CP 실시책임자가 해당 부서 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존재여부 및 CP의 적절한 운영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.

	규정명	사규번호 : 제정일자 : 2022. 12. 23. 개정일자 : 2024. 05. 01. 개정번호 : 1	페이지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		3 / 10

9. "CP 모니터링"이라 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예방 및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에 따라 자율준수전담팀이 회사 내 타 부서에 대하여 현장점검, 체크리스트, 보고서 등을 통해 CP 가 기준과 절차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·조사하는 것을 말한다.
10. "임직원"이라 함은 회사에 소속된 자로서, 정규 및 비정규직, 계약직, 임시직을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위임 또는 관리·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.
11. "제재" 또는 "제재조치"라 함은 구조적·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본 규정 제 21 조에 따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.
12. "포상"이라 함은 회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행위로 회사의 이익증진 또는 손실방지에 기여하거나 공정거래 문화 정착 및 확산에 공헌한 임직원에게 실시하는 조치로, 임직원에게 자율준수에 대한 자긍심과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준수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.

제 2 장 조직 및 업무

제 1 절 대표이사


제 4 조 대표이사의 역할

-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율준수 기능 및 CP 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·물적 자원을 지원하며, 자율준수가 회사의 최우선이 되는 정책임을 보장한다.
- ②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, 자율준수 활동에 대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.

제 2 절 자율준수관리자

제 5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과 해임

- ① 회사는 CP 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.
- ②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관여되어 있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해임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하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한다.

	규정명	사규번호 : 제정일자 : 2022. 12. 23. 개정일자 : 2024. 05. 01. 개정번호 : 1	페이지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		4 / 10


- ④ 자율준수관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이사회 의결로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자율준수전담팀장이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 6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

-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.
- ②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 수행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본 조 제 3 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한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,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.
- ④ 회사는 본 규정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,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.

제 7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총괄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1. 회사의 자율준수 및 CP 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·감독
 2. CP 운영과 관련한 계획, 실적 및 조치·결과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
 3.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조치, 예방조치의 강구
 4.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심의 및 인사위원회 상정
 5.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·정책, CP 등에 대한 임직원 교육
 6. 경쟁당국 관련 대관 업무
 7. 기타 임직원의 자율준수와 CP 운영을 위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 1 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가지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자율준수 실태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·조사권
 2.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
 3.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·시정 요구권
 4. 인사위원회 개최 소집권
 5. 기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원활한 CP 운영을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자율준수전담팀을 구성하여야 한다.

	규정명	사규번호 : 제정일자 : 2022. 12. 23. 개정일자 : 2024. 05. 01. 개정번호 : 1	페이지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		5 / 10

-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업무 수행 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리스크 검토 및 대응방안 모색 등을 위해 외부 법률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 3 절 자율준수전담팀의 역할


제 8 조 자율준수전담팀의 업무 및 권한 등

- ① 자율준수전담팀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보좌하여 회사의 자율준수 및 CP 에 관한 실무를 주관하여 실시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CP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의 수립, 운영
 2. CP 관련 정보의 수집, 분석 및 전파
 3. CP 모니터링 실시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절차의 개선
 4.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, 시정 및 예방조치의 강구
 5. 공정거래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임직원 법률자문
 6.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·정책, CP 등에 대한 임직원 교육 운영
 7. 부서별 자율점검 요청 및 지도·지원
 8. 자율준수편람, 자율준수에 관한 업무기준·가이드라인 등의 작성 및 배포
 9. 경쟁당국과의 소통 및 조사, 자료요청 등에 대한 대응
 10. 제 1 호 내지 제 9 호의 운영계획, 결과 등에 관한 자율준수관리자·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보고
 11.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자율준수전담팀의 독립성 보장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 절 현업부서 및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무

제 9 조 CP 실시책임자의 업무 및 역할

- ① CP 실시책임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부서 내 관리·감독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,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부서 업무와 관련한 CP 의 적절한 운영 여부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자율점검
 2. 제 1 호의 점검에 따른 개선·시정조치의 이행
 3. 공정거래 관련 법규 등의 변경에 따른 해당 부서 업무의 프로세스 변경

 에경케미칼(주)	규정명	사규번호 : 제정일자 : 2022. 12. 23. 개정일자 : 2024. 05. 01. 개정번호 : 1	페이지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		6 / 10

4. 자율준수 및 CP 관련 소속 부서원 교육참여 독려 및 관리
 5.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보고
 6. CP 운영에 관한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전담팀의 업무에 대한 협조
 7. 제 1 호 내지 제 6 호 관련 내용의 기록 및 유지
 8. 기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전담팀이 요청하는 사항
- ② CP 실시책임자는 업무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자율준수전담팀에 보고한다.

제 10 조 임직원의 의무

- 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회사의 규정, 지침·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하여서는 안된다.
- ②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내용·해석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율준수전담팀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정 또는 위반 소지를 인지한 즉시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전담팀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임직원은 직·간접적으로 다른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다른 임직원이 위반하는 행위를 묵인하여서는 안 된다.
- ⑤ 임직원은 경쟁당국으로부터 서면 또는 직권조사, 분쟁조정, 자료제출 협조 요청 등을 수신한 경우 지체 없이 자율준수전담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임직원은 CP 운영에 따른 정기 및 비정기적 점검에 적극 응해야 하며,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전담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⑦ 임직원은 자율준수전담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.


제 3 장 CP 의 운영

제 11 조 자율준수의지 선언

-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.
- ②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와 방침은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임직원에게 전달되도록 하며,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공지되어야 한다.

제 12 조 CP 운영계획의 수립

- ① 자율준수전담팀은 매년 1 분기 내에 해당 연도의 CP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준수관리자의 승인을 득하며, 자율준수관리자는 이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.

	규정명	사규번호 : 제정일자 : 2022. 12. 23. 개정일자 : 2024. 05. 01. 개정번호 : 1	페이지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		7 / 10

- ② 자율준수전담팀은 해당 연도의 CP 운영계획 수립 시 전년도 CP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·시정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을 적절히 반영한다.

제 13 조 CP 모니터링 실시


- ① 자율준수전담팀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위반행위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임직원의 자율준수 실태 등에 대한 CP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며, 자율준수관리자는 이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② 자율준수전담팀은 CP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CP 모니터링 실시 전 관련부서에 대하여 CP 모니터링의 목적 및 범위, 세부 계획 등에 대하여 고지한다.
- ③ 자율준수전담팀은 CP 모니터링을 위하여 관련부서에 각종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임직원 면담,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④ 자율준수전담팀은 CP 모니터링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련부서에 위반사항을 설명하고, 업무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관련부서의 CP 실시책임자는 CP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CP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자율준수전담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부서별 자율점검

- ① CP 실시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업무 시 자율준수편람 등을 활용하여 CP 준수여부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.
- ② CP 실시책임자는 자율점검 결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, 이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자율준수전담팀을 통해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.
- ③ CP 실시책임자는 자율준수전담팀의 요청이 있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율준수전담팀에게 보고한다.
 - 1. 부서 내 CP 기준·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
 - 2. 자율준수전담팀으로부터 부여 받은 부서 내 CP 활동목표 이행 여부 및 달성 수준
 - 3. 부서 내 자율준수편람 등 배포 및 활용 실적
 - 4. 기타 자율준수전담팀에서 요청한 사항

제 15 조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.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야 하며,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.

	규정명	사규번호 : 제정일자 : 2022. 12. 23. 개정일자 : 2024. 05. 01. 개정번호 : 1	페이지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		8 / 10

- ③ 자율준수편람은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 또는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.
- ④ 자율준수전담팀은 자율준수편람 이외에도 임직원의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정한 업무기준·가이드라인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.


제 16 조 자율준수교육의 실시

- ① 자율준수전담팀은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자율준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,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교육 내용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주요 사항 및 업무 수행상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하며, 기타 CP 운영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한다.
- ③ 자율준수전담팀은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, 필요 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을 의무 수강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.
- ④ 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임직원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출장, 휴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임직원은 자율준수전담팀이 회사 교육 플랫폼에 게시한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.
- ⑤ 자율준수전담팀은 전문 지식, 관련 업무경험 및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강사로 선정하여야 하며, 필요에 따라 법무법인, 전문기관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⑥ 자율준수전담팀은 교육계획 및 교육 결과에 대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.

제 17 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

- ① 자율준수전담팀은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때 접수된 내부제보에 대한 실제 조사 업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.
- ② 자율준수전담팀은 내부제보 접수 후 이를 감사부서에 전달하며, 감사부서는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즉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전담팀에게 보고한다.
- ③ 회사는 내부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, 신분 누설, 보복, 색출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, 어떠한 인사상·업무상의 불이익도 주지 않아야 한다. 단, 고의로 허위의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 18 조 CP 운영성과 평가

	규정명	사규번호 : 제정일자 : 2022. 12. 23. 개정일자 : 2024. 05. 01. 개정번호 : 1	페이지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		9 / 10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CP 기준, 절차, 운용 등에 대한 점검,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고,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성과의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9 조 CP 운영현황 보고

자율준수전담팀은 CP 운영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중요 보고사항 발생 시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.

제 20 조 CP 운영상황의 공개

- ① 회사는 자율준수에 대한 회사의 실천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CP 와 관련한 운영규정 및 자율준수편람, CP 운영실적 등을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의 운영상황을 홈페이지 또는 전자공시시스템(DART)에 자율 공시할 수 있다.

제 4 장 제재 및 포상


제 21 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

- ① 회사는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본 규정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제재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② 제재조치의 대상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 이외에,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권유하거나 인정한 행위도 포함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부서별 자율점검 또는 CP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중대한 위반사항일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인사위원회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준을 정하고, 제재조치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한다.

제 22 조 면책의 제한

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.

1.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
2.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해 위반하려는 의도 내지 고의가 없었던 것
3.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하였다는 것

	규정명	사규번호 : 제정일자 : 2022. 12. 23.	페이지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	개정일자 : 2024. 05. 01. 개정번호 : 1	10 / 10

제 23 조 포상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였다고 평가한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부서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.
- ② 인사부서는 제 1 항에 따라 추천 받은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칙<22. 12. 23>

이 규정은 2022 년 12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4. 05. 01>

이 규정은 2024 년 5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